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1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 : 남인순・양정숙・박 정

양경숙 · 홍정민 · 홍성국

맹성규 · 김승원 · 황운하

고영인 • 윤준병 • 송영길

허종식 • 박홍근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.3%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.3%에 달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지위 향상을"을 "지위를 향상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	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
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	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
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	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
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	처우를 개선하고
함과 아울러 그 <u>지위 향상을</u>	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<u>지위</u>
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	를 향상하고 폭력으로부터 보
한다.	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
	력하여야 한다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